

의안번호	2220404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6.8.27.
추계번호	26E387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제1항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자금의 1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- (적용 제외) (현행) 타인의 출자자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·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 → (개정안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6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(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)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적용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제1항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거주자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6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·투자하는 경우 출자·투자한 금액의 1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,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·투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
- 개정안은 소득공제 적용 제외대상에도 불구하고, 「벤처투자조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6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(이하 “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”이라 함)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
 -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‘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’으로, 출자금액의 60% 이상을 중소·벤처기업의 인수·합병, 주식·출자지분·다른 조합의 출자지분 등 인수, 다른 조합에 대한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임(「벤처투자조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6항)
 -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는 M&A펀드, 세컨더리펀드 등이 있음
 - (M&A 펀드) 중소·벤처기업의 M&A를 목적으로 상장 법인 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·지분을 인수하는 벤처투자조합
 - (세컨더리 펀드) 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·지분(구주) 등을 다시 인수하는 벤처투자조합
- 현재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비중(신주 투자 비중)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출자액이 계산¹⁾되는데, 개정안은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비중과 관계 없이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

1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
제14조(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× (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/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)

- 개정안에 따른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행태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출자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게 되므로 현행 대비 소득세수의 감소가 발생하게 됨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의 소득수준, 소득공제 및 소득세 결정세액 현황,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결성 현황,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비중 등 투자 행태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